

의안번호	2212532
의 퇴 인	이재강의원
회 답 일	2025.9.19.
추계번호	25D467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7,300만원, 2031년 1,65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간 총 2억 3,900만원(연평균 4,78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종합계획 (안 제6조)	156.5	—	—	—	—	156.5	31.3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안 제9조)	16.5	16.5	16.5	16.5	16.5	82.5	16.5
합 계	173	16.5	16.5	16.5	16.5	239	47.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종합계획)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통일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9조(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둬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0조(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함)을 둔다	의무규정
5	안 제11조(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이하 “지구”)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조성 및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12조(실태조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역사, 문화, 환경, 생태, 산림, 토지 이용 등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할 수 있다	재량규정
7	안 제13조(문화유산 등의 국외 선양 지원)	정부는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14조(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지원)	정부는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5조(안전 및 출입을 위한 지원)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통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통신 등의 기반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자의 신변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16조(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정부는 북한주민이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을 방문할 경우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문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의무·재량 규정
11	안 제17조(국민 인식 제고와 참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다	재량규정
12	안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통일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3	안 제1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14	안 제20조(재정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5	안 제21조(비무장지대 보전 및 평화)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 보전 및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적 이용 재단)	평화적 이용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음	
16	안 제2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국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종합계획)	○	
2	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	미대상 연도별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작성하게 되므로 기존 인력 안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안 제9조(비무장지대평화 이용위원회)	○	
4	안 제10조(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	—	미대상 통일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기획단은 기존 인력의 직제 개편 및 업무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견 인력으로 조직·구성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5	안 제11조(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	×	미첨부3호 지구 지정 및 조성·개발 운영 추진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 지구의 지원 규모,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
6	안 제12조(실태조사)	×	미첨부3호 비무장지대의 실태조사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현재로서는 추가 재정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움 다만, 통일부의 ‘DMZ 평화적 이용’사업에서는 ‘DMZ 남북공동종합조사’를 통하여 DMZ내 생태·역사·문화자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등에 대하여 남북공동으로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2억원 환경부는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DMZ 생태계보전관리’사업을 통하여 DMZ 일원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10억 5,200만원
7	안 제13조(문화유산 등의 국외 선양 지원)	×	미첨부3호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사업 시행 시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다만, 통일부의 ‘DMZ 평화적 이용’사업의 내역사업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DMZ를 국제평화 상징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59억 5,200만원
8	안 제14조(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지원)	—	미대상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와 관련하여 통일부의 ‘DMZ 평화적 이용’사업의 내역사업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내에서 지뢰제거를 위한 예산으로 2024년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방부는 ‘시설정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뢰제거’ 사업을 수십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26억 9,300만원
9	안 제15조(안전 및 출입을 위한 지원)	×	미첨부3호 비무장지대의 출입·통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통신 등의 기반 시설 구축 시 구체적 지원 규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어 추계가 곤란함
10	안 제16조(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	미첨부3호 북한주민이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을 방문할 경우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어 추계가 곤란함
11	안 제17조(국민 인식 제고와 참여)	×	미첨부3호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 시행 시 사업의 내용 및 지원 규모, 지원 범위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추계가 곤란함
12	안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	미첨부3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 지원인원, 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계가 곤란
13	안 제19조(종합정보시스	×	미첨부3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템 구축 및 운영)		종합시스템의 정보 활용 체계, DB화 대상 자료의 범위,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이에 따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도입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가 곤란함 다만, 통일부의 'DMZ 평화적 이용'사업의 내역사업인 'DMZ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DMZ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평화적 이용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포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메타버스, 평화지도, 출입시스템 등) 2022예산액 11억원(집행: 8.1억원), 2023예산액 14.6억원(집행: 10.8억원), 2024년 예산은 10.61억원
14	안 제20조(재정지원)	×	미첨부3호 비무장지대의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규모,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15	안 제21조(비무장지대 보전 및 평화적 이용 재단)	×	미첨부3호 재단의 규모,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16	안 제2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미첨부3호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 시 보상금 등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사용될 토지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기간 동안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비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종합계획(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경우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1억 5,648만원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추계기간 동안 종합계획은 2027년에 1차례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로 통일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전략 보고서 연구용역'에 소요된 예산 1억 2,000만원(2014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¹⁾을 적용하여 1억 5,648만원으로 추계

나. 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회의 운영비 등의 비용으로 연간 1,65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제정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을 1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
 - 통일부의 유사 위원회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당연직 16명, 위촉직 8명)가 연간 3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므로 이와 유사하게 연간 3회 운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명의 외부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²⁾ 및 안전검토비³⁾의 추가소요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1,650만원으로 추정

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비자 물가 상승률(%)	0.7	1.0	1.9	1.6	1.8	0.5	2.5	5.1	3.6	2.3	1.9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50쪽)

- 3) 통일부의 'DMZ 평화적 이용'사업의 내역사업인 '접경지역 공동위원회'의 안전검토비 단가 30만원 준용

- 회의 참석수당 750만원=10명×3회×25만원
- 안전검토비 900만원=10명×3회×30만원

다.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3,900만원(연평균 4,78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종합계획 (안 제6조)	156.5	-	-	-	-	156.5	31.3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안 제9조)	16.5	16.5	16.5	16.5	16.5	82.5	16.5
합 계	173	16.5	16.5	16.5	16.5	239	47.8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